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12. 16(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12. 6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0. 12. 6

라. 상정일자 : 2010. 12. 7(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 보건사회국장 최 경 환
- 검토보고 : 문화복지전문위원 유 한 경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 피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과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주요내용

- 위로금 지급 심의를 위해 위로금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조)
- 위로금 수령, 지급결정 및 통지, 청구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8조)
-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로금과 기타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도록 함(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민간인에 대하여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10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 사례) 사고관련 보상조례 및 사고개요

관련보상조례	사 고 개 요	비고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화재사고관련 보상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1999. 10.30 18:52분경 - 장소 : 인천시 중구 인현동 27-14 - 인명피해 : 137명(사망57, 부상80) - 사고원인 : 화기취급부주의 	
대구광역시 지하철 화재사고 피해보상에 관한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0. 2.18 9:53분경 - 장소 : 대구지하철 제1079호 5호차내 - 인명피해 : 340명(사망192, 부상148) - 사고원인 : 정신지체자의 방화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9. 11.14 14:26분경 - 장소 : 부산 중구 신창동 국제시장4공구 가나다라실내실탄사격장 - 인명피해 : 16명(사망10, 부상6) - 사고원인 : 원인불명 	

-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옹진군 연평도 마을과 군주둔지 주변을 기습적으로 포격하여 발생한 인적피해 28명중 민간인 부상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피해보상을 준비하고 있어 사망자 2명에 대하여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인적피해현황

계	군 인		민 간 인	
	전 사	부 상	사 망	부 상
28명	2명	16명	2명	8명

2) 주요내용

가. 제2조 (위원회의 설치)

-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및 장례비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
- 시 관계부서에 의하면 사망자 위로금 등은 예비비에서 집행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임.

나.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은 공무원·시의원·법률고문·보상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함.
- 제4조 제4항은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의 의결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다. 제5조 (수령권자)

- 위로금 등의 수령권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¹⁾으로 함.

1) 제1000조 (상속의 순위 <개정 1990.1.13>)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라. 부칙 제2조 (경과조치)

-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로금 등 지급 및 그 밖의 관련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규정함.
- 피해자와 보상합의에 따라 12월 6일 장례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위로금 지급 등 조례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박승희·안영수 의원

- 민간인 부상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피격사건의 원인과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목적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 답 변 >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부상에 대하여는 용진군에서 피해보상을 검토중에 있으며, 목적조항의 수정은 가능할 것임.

< 질 의 >

○ 신현환의원

- 조례 제출전 이루어진 행위는 어떤 것인지 ?

< 답 변 >

○ 보건사회국장 최경환

- 피해자와의 보상을 위한 구두합의가 있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이강호, 안영수, 신현환, 박승희, 박순남 위원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 5명)

7. 기타 특이 사항

○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용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피격사건으로”를 “북한의 포격사건으로”로 한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피격사건 사망자 위로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0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서 발생한 북한의 포격사건으로 사망한 민간인 유가족에 대하여 위로금과 장례비를 지급함으로써 민간인의 희생을 위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에 따른 위로금과 장례비(이하 “위로금 등”이라 한다) 지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옹진군연평면피격사건위로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망자 위로금등에 대한 심의·의결
2. 그 밖의 위로금등 지급과 관련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천광역시 법률고문 및 그 밖에 보상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피격사건 위로금등 지급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수령권자) 위로금등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제6조(지급결정) 위로금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지급결정 통지) 시장은 위로금등 지급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수령권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절차를 준용한다.

제8조(지급 청구) 위로금등 수령권자는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이주, 국외출타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로금등 지급 및 그 밖의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위로금등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